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60
----------	------

2020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전석기 의원 의원(찬성자 31명)
- 나. 발의일자 : 2020년 2월 4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2월 12일
- 라. 상정결과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년 9월 3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전석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회는 80명 이내의 심의위원 Pool제를 구성하고 심의회의는 13명 이내, 윤번제로 시행하였으나 2017년 11월부터 고정 20명의 심의위원으로 심의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20명 심의제로 변경된 후 작품의 질은 변동이 없는데도 심의 통과율이 65%에서 39%로 크게 하락하고 연속해서 7번 부결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심의로 인한 과도한 비용발생과 건축물 사용 시

점 지연 등 부정적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유사한 서울시 건축심의 등은 공정성과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약 150명의 Pool제로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현행 20명의 폐쇄적인 심의방식을 개방적인 Pool제로 변경하여 시민 중심의 심의로 전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인원수를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에서 60명 이상 100명 이내의 Pool제로 변경하고 심의시마다 15명이상 20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21조제1항).
-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석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줌(안 제22조제2항).
- 건축주, 작가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을 현행 20명에서 60명 이상 100명 이내의 개방적인 Pool제로 변경하고, 심의시마다 15명이상 20명 이내 심의위원을 선정,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19.3.26. 전석기, 박기재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보류 되었다가 폐기 후 ’20.2.4.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한 것임.

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요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1)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과 도시공간에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도시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에게 다양한 예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는 제도로,

1972년에는 권장사항이었다가 1995년부터 의무화되면서 연면적 1만 m^2 이상 건축물에서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약 0.7%)에 해당하는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건축주의 의무 이행을 다양화하기 위해 설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가능하도록 '선택적기금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연혁>

- 1972년 :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시 권장사항(건축비의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1995년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화(건축비의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2000년 : 설치비용 경감(건축비의 1%에서 → 0.7% 이하로)
- 2011년 : 선택적기금제 도입(설치금액의 70%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가능)

다.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 2017년 심의위원회 개선의 배경과 단기적 성과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2)에 따라 구성된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22년간 인력 Pool 방식, 즉, 80명 이내로 심의위원 Pool을 구성하고 심의 시에 Pool에서 운번제로 13명 이내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하는 방식으로 구성·운영되어 왔으나,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한편에서는 건축물사용승인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심의 일관성 및 연속성 부재, 위원 전문성과 책임감 결여가 지적되었고,

특히 건축물 사용승인에 임박한 밀어내기식 작품 승인결과인 무분별한 작품설치로 인해 건축관계자의 공공미술에 대한 의식 저하, 건축물사용승인 후 미술작품 방치·훼손, 공공성 및 접근성 저하, 미술작품의 질 저하, 도시미관 저해로 시민과 언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었음.

- 이에 따라 시는 2017년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제출시기를 ‘건축물사용승인 전’에서 ‘건축허가신청 시’로 개선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방식을 80명 Pool 방식에서 20명 고정방식으로 바꾸어 작가, 건축주, 대행사, 심의위원 등의 작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고 책임감을 강화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였고,

약 2년 운영한 결과 공공미술 작품의 질이 개선됨은 물론, 특정작가에게 작품이 집중되는 현상이 감소되고, 다양한 작가의 작품이 승인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미술로서의 공공성, 접근성 및 다양성이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 미술작품>



2) 개선 이후 새로 제기된 민원

- 미술계 일부³⁾에서는 市가 심의제를 개선한 이유로 제시한 “특정 작가 수혜(독과점 문제)에 문제점”은 잘못된 통계수치에 근거한 것이며, “공공미술작품의 부정비리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근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어졌다”고 반박하고,

현행조례에 근거한 “서울시 고정제 심의위원(20명) 독점적권한의 문제점”으로 “예술의 독재화”, “전문성 결여”, “고의적으로 부결율을 높여서 기금으로 유도하는 의도”, “심의가 아닌 불법심사제” 등을 주장하고 있음.

3) 한국미술협회, 한국조각가협회에서 “서울시 건축물공공미술작품시의 문제점 및 개선안(2019.12.13.)”을 제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소수고착화(20명제-3년간 시행)로 독점적 권한부여의 부작용

○ 예술의 독재화

- ▶ 심의위원들의 제자, 지인들 통과사례 다수
- ▶ 기획사나 화랑들은 심의위원들에게 작가추천을 받고 심의를 통과시키는 부정사례 속출
- ▶ 학연, 인맥을 통한 부정적 사례
- ▶ 공정한 평가의 기회만 의지할 수 없는 지방작가, 전업작가, 특히 젊은 작가들 피해 심각

○ 전문성 결여(조각전문위원이 10-20%로 전문적 의견이 부족)

- ▶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취향이나 개인의 선호도가 심의에 개입
- ▶ 비구상, 추상적인 작품은 부결수가 낮음, 구상작품이나 칼라작품은 부결수가 높음
- ▶ 고정된 심의위원의 구성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기회가 없음

○ 고의적으로 부결율을 높여서 기금으로 유도하는 의도가 보임

- ▶ 2018년 1차~2019년 13차 심의까지 4회 이상 부결작품 18건
- ▶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현행 제도를 지방의 시도의 지역문화예술기금으로 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이석현 의원 발의 2019.10.29.)
- ▶ 준공시점까지 부결로 인한 강제기금은 입주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사적기금 강제로 탈취한 행위(법적분쟁 소지)

○ 심의가 아닌 불법심사제

- ▶ 심의시 서울시에 5년안에 5번 이상 설치한 작가는 심의에서 제외시키고 심의를 한다
- ▶ 지인 제외사례 다수 - 심의위원 고정제 변경 이후 5회심의 중 5회 가결, 7회심의 중 6회 가결, 3회심의 중 3회 가결 등
- ▶ 예술 문화의 발전과 창작성을 통제하는 범죄행위
- ▶ 서울시와 경기도는 작가의 공공미술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공미술포털사이트를 심의시 공식적으로 악용하는 불법행위

- 이 같은 미술계 일부의 주장을 몇 가지 논점으로 정리하여 검토하고자 함.

(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윤번제로 운영하는 문제

- 미술계 일부에서는 현행조례의 20인 고정제 시행으로 특정인들의 예술 독점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논거로 심의위원들의 제자, 지인들이 심의를 통과하는 사례, 기획사나 화랑들은 심의위원들에게 작가 추천을 받고 심의를 통과하는 사례, 학연이나 인맥을 통한 부정사례가 있음을 들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를 확대하여 윤번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과거의 방식, 즉 80명의 위원 Pool에서 윤번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결과 특정작가 및 대행사들의 독과점행위와 위원들을 향한 로비가 만연하고 창작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법을 개선한 것인데,

- 개선된 정책 시행 후 약 2년 만에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기회도 없이 무작정 과거로 회귀하면 행정의 신뢰도 저하를 가져오고 건축주의 미술작품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뿐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

(나) 높아진 부결률의 문제

- 미술계 일부에서는 2017년 심의제도 변경 이후 부결률이 높아져 작가의 창작활동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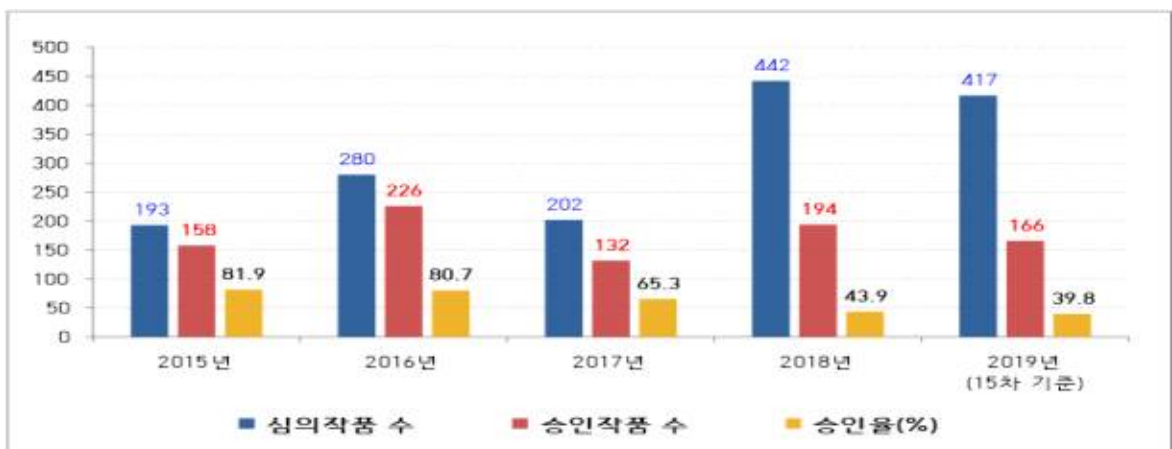
그 근거로 서울시의 2017년 35%(총 202건 중 70건 부결)였던 부결률이 2018년에는 61%(총 312건 중 189건 부결)로 높아졌고, 2019년에도 60%(총 354건 중 211건 부결)에 이르고 있음을 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미술작품 심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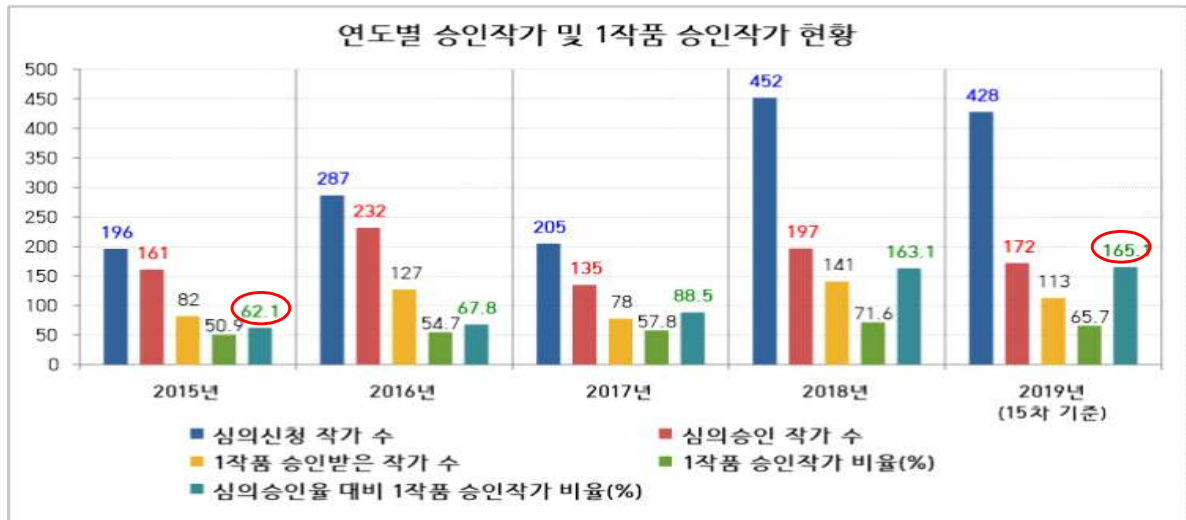
연도별	심의건수	부결건수	부결률
2017	202	70	35%
2018	312	189	61%
2019	354	211	60%

-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승인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작가에게 작품이 집중되는 현상이 감소하고 다양한 작가의 작품이 승인되고 있다는 것, 승인작가, 특히 신진작가군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심의제도 개선의 중요한 성과라는 반론을 주장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미술작품 심의현황>



<최근 5년간 미술작품 승인작가 현황>



(다) 심의위원의 전문성 문제

- 미술계 일부에서는 2017년 심의제도 변경 이후 부결률이 높아졌고,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취향이나 선호가 심의에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각에 대한 전문성, 전문적 의견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심의위원 중 조각을 전공한 위원 수가 10~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 실제로는 현재의 심의위원 중 조각전문가가 6명(작가 1명, 교수 4명, 미술사학회장 1명)으로 30%를 차지하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 분야별 위원 현황 : 정원 20명(현재 분야별 전문가 16명, 80% 차지)

구분	계	외부위원(위촉직)									내부 공무원
		조각	회화	평론	디자인	미디어	건축	조경	시의원	시민	
인원	20	6	2	2	1	1	2	2	2	1(예정)	1
비율	100%	30%	10%	10%	5%	5%	10%	10%	10%	5%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를 조각 전공자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조각에 한정하지 않고 “회화·조각·공예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조각분야의 전문가 수가 적다고 하여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하지만,

심의작품 중 조각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승인 작품의 71.5%를 차지하던 조각분야가 2018년 61.8% 감소했다가 2019년 83.7%로 다시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각전문가를 더 늘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최근 5년, 분야별 미술작품 승인현황>

심의 년도	승인 작품수	분야별 미술작품 승인현황					
		구분	조각	회화	부조	미디어	기타
2019	166	작품수	139	21	1	3	2
		비율	83.7%	12.7%	0.6%	1.8%	1.2%
2018	194	작품수	120	52	12	6	4
		비율	61.8%	26.8%	6.2%	3.1%	2.1%
2017	132	작품수	90	28	5	7	2
		비율	68.2%	21.2%	3.8%	5.3%	1.5%
2016	226	작품수	147	68	5	1	5
		비율	65.1%	30.1%	2.2%	0.4%	2.2%
2015	158	작품수	113	27	10	6	2
		비율	71.5%	17.1%	6.3%	3.8%	1.3%

(라) 독점화와 형평성의 문제

- 미술계 일부에서 심의제도 변경으로 독점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그 근거로 학연이나 인맥을 통한 부정사례, 심의위원들의 제자나 지인들의 작품 통과 사례가 다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 심의위원 16명⁴⁾을 소속별로 보면 홍익대 1명, 국민대 1명, 가천대 2명, 서울대 2명,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 1명, 서울시립대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각분야 전문가 중 교수는 홍익대, 국민대, 가천대, 서울대로 확인되며,

2019년 신청작가 428명의 출신학교별로 보면 홍익대 17%, 서울대 16%, 이화여대 5%, 중앙대 2% 순이고, 2019년 승인작가 172명의 출신학교는 홍익대 25%, 서울대 20%, 이화여대 5%, 중앙대 3% 순으로, 신청작가와 승인작가의 상대적 비율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함.

<2019년 신청 및 승인 작가 중 출신학교 현황>

연번	학교	신청작가수	신청작가수 비율	승인작가수	승인작가수비율
1	서울대	68명	16%	34명	20%
2	홍익대	74명	17%	44명	25%
3	이화여대	20명	5%	8명	5%
4	중앙대	9명	2%	5명	3%
5	기타	각 9명 미만	각 2%미만	각 5명 미만	각 3%미만

4) 심의위원 20명 중 시의원과 시민(예정), 내부 공무원을 제외한 수(2020년 3월 기준)

(마) 문화예술진흥기금 유도

- 미술계 일부에서 심의위원들이 고의로 부결률을 높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제1항제4호⁵⁾를 근거로 조성되고 동 법 제18조⁶⁾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보다는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진흥에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국회 소병훈 의원(2016.8.29. 발의)과 이석현 의원(2019.10.29. 발의)이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고자 국회에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지자체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현황을 살펴보면, 출연건수별, 출연금액별 모두 서울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5) 「문화예술진흥법」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6) 문화예술진흥법」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지자체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현황>

(2020.6.17. '공공미술포털' 기금출연통계 조회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지자체	건수	출연금액
총계	379	38,628
서울	55	7,748
세종시	5	709
부산	34	3,197
대구	10	653
인천	24	2,997
광주	7	481
대전	2	144
울산	15	904
경기	153	17,058
강원	10	354
충북	5	450
충남	12	794
전북	11	367
전남	7	252
경북	8	569
경남	17	1,569
제주	4	380

- 2011년 선택적기금 제도 신설 이후 기금 출연 현황은 경기도의 153건 약 171억원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가 55건 약 77억 4천8백만원이며,

2017년 5건, 약 12억6천만원에서 2019년 16건, 약 20억4천만원으로 2017년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기금 출연이 크게 늘어났음.

이는 조례제정 이전에는 준공이 임박한 미술작품을 대부분 승인하던 것을 조례제정 이후에는 준공이 임박해도 공공미술 심의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부결하는 등 심의를 강화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현황>

(2020.6.17. '공공미술포털' 기금출연통계 조회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55	2	1	4	3	5	16	18	6
출연금액	7,748	57	27	566	806	1,259	1,908	2,480	645

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공공미술위원회는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용지에 신규 설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하는 등의 공공미술 사업 및 작품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며 심의 건수는 2019년 6건, 2020년 7월 기준 4건으로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심 의	자 문	보 고	회의개최
총계	21건	20건	24건	27회
'17.12.	1건	1건	1건	2회
'18.1.~12.	13건	11건	7건	10회
'19.1.~12.	6건	6건	15건	11회
'20.1.~ 7.	4건	2건	1건	4회

- 현행조례 제5조는 공공미술위원회가 심의 뿐 아니라 자치구나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자문, 보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역할을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5조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미술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u>심의</u>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이하 "공공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 ----- ----- ----- <u>자문 또는 심의</u> ----- ----- -----.

- 현행조례 제7조제4항에 대한 수정의견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많지 않으므로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던 제한을 삭제하여 더 많은 공공미술 사업과 작품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임.

최근 3년 재심 건수는 2018년 4건, 2019년 1건, 2020년 7월까지 발생하지 않은 바, 재심 신청을 1회로 제한하는 단서 조문을 삭제하여 재심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7조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7조(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④ 제2항에 따른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u>다만,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u>	제7조(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④(현행과 같음)	제7조(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④ ----- ----- ----- ----- <u>---.(삭제)</u> -----

- 현행조례 제8조제1항은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의 인원에 대해 ‘7명 이상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증원에 맞추어 일부 증원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순서를 전문가, 상임위원회 위원, 담당 공무원 순으로 재배열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조례 제8조제4항은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2년, 한 차례 연임’을 ‘1년, 한 차례 연임’으로 수정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연임을 통한 장기간 위원활동을 제한하고자 함.

<안 제8조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p> <p>① 공공미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u>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1. <u>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p> <p>2. <u>관련 학회·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치거나</u></p>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p> <p>① ----- ----- <u>15명 이내의 위원</u>-----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1. <u>미술·기획·건축·조경·유지관리 등의 전문가</u></p> <p>2.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p>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p> <p>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p>		<p>3.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 현행조례 제10조는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임기가 1년으로 조정된다면 잔여 임기가 길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10조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 현행조례 제15조는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있어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으로 2017년 조례제정 이후 운영해 본 결과, 실제로 지역주민이나 외부전문가는 참석한 경우가 없어서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를 ‘작가’로 수정하고자 함.

<안 제15조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5조(협조요청 등)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 <u>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또는 관련 부서의 장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제15조(협조요청 등) (현행과 같음)	제15조(협조요청 등) ----- ----- <u>작가 또는</u> ----- ----- ----- -----.

- 현행조례 제18조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사항을 혼재하여 명시한 조문을 각각 분리하여 제1항은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평가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며,

현행조례 제18조제2항의 경우 민간에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공장소 및 특정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심의를 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며,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발생한 사례가 없고, 민간 소유 재산에 관여하는 것은 위원회가 월권하는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안 제18조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1. <u>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u> 2. <u>건축물 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과의 친화성, 설치위치의 적정성)</u> 3. <u>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성</u> 4. <u>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u>	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개정안과 같음) 1. 「 <u>문화예술진흥법</u> 」 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u>건축물 미술작품</u> 2. 제20조제2항에 따른 <u>공모당선작 선정</u> 3. <u>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u>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5. <u>건축물 미술작품과 건축물과의 조화</u> 6. <u>소장품 설치의 적정성</u> 7. <u>건축물 미술작품 가격의 적정성</u> 8. <u>제20조 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u> 9. <u>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철거</u> 10. <u>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u>		
② <u>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공장소 및 특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신 설>	③ <u>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u> 1. <u>미술작품의 가격</u> 2. <u>미술작품의 예술성</u> 3. <u>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u> 4. <u>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u> 5. <u>미술작품의 안전성</u> 6. <u>유지관리의 적정성</u> 7. <u>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등</u>

- 현행조례 제19조제3항은 심의를 위해 건축주가 건축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미술작품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축계획(연면적, 배치계획 등)이 확정(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 건축물의 허가절차 완료)되어야 하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처리 완료 전 변동, 허가 처리 후 착공신고 전 변동,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주민이주 등 기간 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축관계자 및 작가 등의 민원이 있었음.

이에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신고 시 미술작품 설치대상 면적을 확정
 한 후 미술작품 심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19조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③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전까지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③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 ----- ----- ----- -----.

- 개정조례 안 제21조제1항은 심의위원 Pool을 확대하여 운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인데, 20여 년간 쌓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제로 재구성한 것을 시행 2년여 만에 다시 과거 방식으로 회귀하면 행정신뢰도 저하 및 공공미술로서의 미술작품에 대한 건축주 인식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어 개정안이 발의된 2월 부터 현재까지 논의한 결과 발의의원이 30명 고정제로 운영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였으며,

개정조례 안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의결이 기준에는 평균 70점 이상이어야만 승인을 했으나 2020년 1월 심의부터는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도록 이미 개선되어 실행하고 있는 무의미한 조문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하기보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각 호의 위촉하는 위원을 전문가, 상임위원회 위원, 담당 공무원 순으로 재배열하고자 하며, 제21조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을 '1년, 한 차례 연임'으로 수정하여 공공미술위원회의 임기와 통일시켜 연임을 통한 장기간 위원활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안 제21조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1. <u>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p> <p>2.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p> <p>3. <u>그 밖에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등</u></p> <p>4. <신 설></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u>1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 ----- -----<u>6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시마다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p> <p>4. <신 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 ----- -----<u>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1. <u>미술·기획·건축·조경·유지관리 등의 전문가</u></p> <p>2.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p> <p>3. <u>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p> <p>4. <u>미술작품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u></p> <p>④ ----- <u>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 개정조례 안 제22조제2항에서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 신변보호, 자유로운 의견개진, 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심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참석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명단 사전 공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임.
- 개정조례 안 제22조제3항은 건축주·작가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안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심의건수 및 신청 작가수가 2배 이상 증가 되어 서류 이외의 심의 준비 등 공무원들의 행정력에 무리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과 심의위원에게 과도한 부담감을 주는 것이며, 예술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2015년~2019년 심의작품 건수 증가현황>

연도별	심의건수	작가수
2015	193	196
2016	280	287
2017	202	205
2018	442	452
2019	417	428

- 심사위원 재구성 후 회당 상정 작품 평균 개수는 30건이며, 회당 재심 안전은 평균 7건(27%), 3심 이상 안전은 5건 내외(약 17%)로 재심 안전에 발표 기회를 부여할 경우 실무적으로 평가, 시간, 수당지급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일반작품 심의현황>

구분	심의횟수	회당평균 작품수	회당평균 신규작품		회당 평균 2심 작품		회당 평균 3심 작품		회당 평균 4심 이상 작품	
			작품수	비율	작품수	비율	작품수	비율	작품수	비율
2018	14회	29건	17건	59%	8건	28%	3건	10%	1건	3%
2019	12회	33건	16건	48%	9건	27%	4건	12%	3건	9%
2020.8 월기준	5회	23건	10건	43%	6건	26%	3건	13%	2건	9%
평균		30건	14건	50%	7건	27%	3건	11%	2건	6%

- '20년 재심 작품 분석결과 약 50%는 작가가 교체되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재심안건이지만 신규작품에 해당되므로 작가별 작품 설명기회 부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임.

<2020년 심의 작가 또는 작품 교체 현황>

총 심의작품수	2심 이상 작품	2심 작품		
		계	작가교체	작품교체
113건	55건	28건	13건(46%)	15건

다만, 심의위원의 신변보호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저해할 수 있고 심의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이므로, 개정조례 안 제22조의 조제목을 ‘규정의 준용’에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수정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에 작가 및 작가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설명할 수 있게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개정조례 안 제22조제4항에서는 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도 월 1회 정기개최, 필요시 수시개최를 하고 있으며 작품 심의 건수가 조례 제정 이후 2배 이상 늘어나 최근에는 월 2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22조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2조(규정의 준용) 그 밖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u>구성 및</u>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규정의 준용) ① (원안과 같음)	제22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u>운영에 관한 사항은</u>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u>다만, 제15조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신 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전 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석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건축주, 작가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삭 제>
<신 설>	④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삭 제>

라. 종합의견

-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작품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22년간 인력 Pool 방식의 “윤번제”로 운영한 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7.11.19.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재구성하여 20명의 “고정제”로 운영하고 있음.

- 조례 제정 이후 약 2년 심의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미술작품 설치를 검토함으로써 준공일정 차질에 대한 심의위원 및 지자체의 심의 부결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하여 세밀한 심사가 가능해졌고,
 - 신진 작가와 새로운 작품의 수가 증가했으며,
 -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건축관계자 등의 인식이 개선되었고,
 - 무엇보다 공공미술작품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성과가 있었던 반면,

 - 승인 부결률이 높아졌으며 째짜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어, 특정인들의 예술독점화에 대한 이러한 미술계의 비판 여론에 대한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 조례안이 발의되었음.

- 하지만 미술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방식의 윤번제로의 변경은 개선방안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어서 행정의 신뢰도를 낮추게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의 부결률 개선이 질적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을 현재와 같이 고정제로 할 것인가, 과거와 같은 윤번제로 회귀할 것인가의 논란은 미술계 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외부에서 보면 개혁에 대한 저항인가, 개혁하고자 했으나 새로운 적폐가 만들어진 결과로 인한 반작용인가에 대해 논란으로 비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공공미술작품을 향유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1995년부터 지금까지 도시 곳곳에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의 유지 · 관리 또한 중요한 문제이며, 법령상 “공공미술작품이 철거 · 훼손 · 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 · 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할 우려도 있으므로,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가 법에 의해 강제되는 구색 맞추기용 작품 설치가 되지 않으려면 시민들의 예술을 즐길 권리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건축물미술작품의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에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수정의견 종합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p>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미술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u>심의</u>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이하 "공공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 ----- ----- <u>자문 또는 심의</u> ----- ----- -----.</p>
<p>제7조(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④ 제2항에 따른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u>다만,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u></p>	<p>제7조(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④ ----- ----- ----- ----. <삭 제></p>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미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u>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u>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 2. <u>관련 학회·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u> 3.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 ④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 ----- <u>15명 이내의 위원</u>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 <u>미술·기획·건축·조경·유지관리 등의 전문가</u> 2.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 3. <u>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 ④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4. <신 설></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u>1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4. <신 설></p>	<p>4. <u>미술작품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u></p> <p>④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22조(규정의 준용)</p> <p>그 밖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u>구성 및 운영</u>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2조(규정의 준용)</p> <p>① (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석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③ 건축주, 작가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④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제22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p> <p>그 밖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u>운영에 관한 사항</u>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5조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붙임1. 건축물미술작품 재심의 사항>

작품명: Butterfly Rider	
	
2018년 6월 10차 심의	2018년 7월 12차 심의
부결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미의식을 제공하지 못함 • 작품은 문제 없으나 안전성이 문제 • 작품가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접근할 수 없도록 회양목을 군식으로 식재하여 접근을 막아야 함

⇒ 재심 시에는 작품가격 조정(2.5억→1.9억), 접근성에 따른 안전성 취약 부결사유에 대해 접근성을 고려하여 좌대 및 회양목을 보완 설치함

작품명: AURELIAN 2018-Empress Issoria II		
		
2018년 9월 15차 심의	2018년 10월 17차 심의	2018년 11월 18차 심의
부결	부결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성에만 치우침 • 상투적 대중성 • 작품가 과다 • 설치장소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적 상상력 미흡 • 키치적 요소가 다분 • 수정하지 않은 듯 • 설치장소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을 화사하게 만들 • 조형성이 심미적 취향에 따라선 흥미로움 • 설치장소 큰 무리없음

⇒ 재심 시에는 실제 회화 사진으로 도서를 보완 작성하여 제출함

작품명: AURELIAN 2018-Heath Fritillary IV		
		
2018년 9월 15차 심의	2018년 10월 17차 심의	2018년 11월 18차 심의
부결	부결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치게 장식적 • 동시대 미의식 부족 • 작품가 과다 • 설치장소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해한 조형성 • 주변 환경과 부조화 • 지난 신청 작품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음 • 설치장소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한 작품 • 조형성이 심미적 취향에 따라선 흥미로움 • 옥외환경에 적합한 주물작업 권고

⇒ 재심 시에는 건축주 등의 의견을 존중한 작품선정 이유 보충설명,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에 대해 현장사진에 근거한 도서 작성, 흑백 이미지 탈피하고자 파스텔톤 채색으로 보완 제출함

작품명: 원심림	
	
2019년 6월 8차 심의	2019년 7월 9차 심의
부결	승인 (유지보수비용 예산안 포함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환경에 설치예정이므로 유지·보수와 구조 안정성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미술의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측면에서 빛 공해, 경관침해 문제 등이 걱정됨 • CG에선 깔끔해보이나, 실제 설치에선 조잡해보일 수 있으므로 해결방안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만 잘된다면 신선한 시도 • 옥외환경에서 내구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구설치보다는 기한 한정 전시가 나을 듯 • 작품가 과다

⇒ 재심 시에는 구조적 안전성 보강, 유지보수 용이한 소재 선택함을 보충설명, 관람객 안전 확보 및 개선사항 등을 도서에 보완 작성하여 제출함

<붙임2. 국회 및 서울시 법령 개정 진행 현황>

1) 국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연번	의원명	내용	발의일	비고
1	소병훈 의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016.8.29	임기 만료 폐기
2	박정 의원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 부여, 설치된 미술작품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률 규정하고자 함	2016.9.22	임기 만료 폐기
3	송기현 의원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8.5.21.	임기 만료 폐기
4	박정 의원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019.9.18.	임기 만료 폐기
5	이석현 의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자 함	2019.10.29	임기 만료 폐기

2) 서울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

연번	건의 안건	내용	결과
1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금액 예치금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설치금액 예치금 규정 신설 ▪사용승인 이후 1년 이내 심의 승인을 받아 미술작품 설치 ▪작품설치 완료하고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에게 예치금 반환 ▪1년 이내에 심의승인 및 작품 설치를 못할 경우 선택적 기금으로 출연 	공탁금 제도와 유사한 부분이며, 개정안에 미반영
2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건축물 소재 지자체의 기금으로도 출연 가능토록 개선 ▪미술작품설치금액의 일부 금액을 기금으로 부분납부 가능토록 개정 	설치금액 일부를 기금 출연하는 방법은 개정안에 포함됨
3	건축물미술작품 공공용지에 설치 가능토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금액 적용 요율을 조례로 결정 ▪지자체 재량권을 통해 공공용지 등 적정한 설치공간에 작품 설치 	공공용지에 설치 시 관리주체, 소유권, 사후관리 비용 등 문제 발생
4	미술작품 사후 관리의무 명시 및 과태료 조항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미술작품의 철저한 사후관리 강화로 도시미관 개선 ▪미술작품의 생애주기 설정으로 건축주의 유지관리기간 합리화 	사후관리 벌칙 조항 개정안에 포함
5	건축물미술작품 심의 신청 및 설치시기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허가 이후 착공 이전에 심의 신청하도록 규정 ▪착공 전 심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선택적 기금으로 출연 	개정안에 포함
6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검수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설치 완료 시 심의도서와 일치 여부에 대한 검수 제도 의무화 ▪미술작품설치 완료 시 건축주는 작품에 대한 검수 요청 ▪시·도지사는 미술작품 검수자를 지정, 검수자는 시·도지사에게 작품확인보고서 제출 	검토중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미술위원회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한 바, 위촉 위원 임기를 통일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 서류 제출 시기를 건축허가가 아닌 착공신고 시로 수정하며,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안건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60
----------	---------

제안년월일 : 2020년 9월 3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미술위원회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한 바, 위촉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통일하며,
- 미술작품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축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되는 변동으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므로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신고 시 미술작품 설치대상 면적을 확정된 후 미술작품 심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안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

2. 수정안의 주요 내용

- 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미술작품설치계획서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일반

시민을 위촉하며,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안 제21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음(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심의”를 “자문 또는 심의”로 하고,

안 제7조제4항의 단서조항 “다만,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안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 “1. 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련 학회·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 “1. 미술·기획·건축·조경·유지관리 등의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안 제8조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0조 조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며,

안 제10조 중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5조 중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또는”을 “작가 또는”으로 하며,

안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 “1.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2. 건축물 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환경과의 친화성, 설치위치의 적정성)
3.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성
4.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성 및 보존성
5. 건축물 미술작품과 건축물과의 조화
6. 소장품 설치의 적정성
7. 건축물 미술작품가격의 적정성
8.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
9.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철거
10. 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을

-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축물미술작품
2.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
3. 건축물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로 하고,

안 제18조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여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미술작품의 안전성
6. 유지관리의 적정성
7.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등”으로 하고,

안 제19조제3항 중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전까지”를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로 하며,

안 제21조제1항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시마다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 “1.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그 밖에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등”을

“1. 미술·기획·건축·조경·유지관리 등의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안 제21조제3항제4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시민위원 선정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으로 하고,

안 제21조제4항 중 “1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22조의 조제목 “규정의 준용”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안 제22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본문 중 “구성 및”을 “운영에 관한 사항은”으로 하고,

안 제22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제15조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안 제22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미술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이하 "공공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 ----- ----- 자문 또는 심의 ----- ----- -----.</p>
<p>제7조(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④ 제2항에 따른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p>	<p>제7조(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④ ----- ----- ----- ----. <삭 제></p>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미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u>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 2. <u>관련 학회·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u> 3.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 ④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 ----- 15명 이내의 위원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u>1. 미술·기획·건축·조경·유지관리 등의 전문가</u> <u>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 <u>3.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 ④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4. <신 설></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u>1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4. <신 설></p>	<p>4. <u>미술작품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u></p> <p>④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22조(규정의 준용)</p> <p>그 밖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u>구성 및 운영</u>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2조(규정의 준용)</p> <p>① (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석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③ 건축주, 작가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④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제22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p> <p>그 밖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u>운영에 관한 사항</u>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5조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5조 중 “심의”를 “자문 또는 심의”로 한다.

안 제7조제4항의 단서조항 “다만,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1. 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련 학회·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1. 미술·기획·건축·조경·유지관리 등의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안 제8조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0조 조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한다.

안 제10조 중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5조 중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또는”을 “작가 또는”으로 한다.

안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 “1.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2. 건축물 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환경과의 친화성, 설치위치의 적정성)
3.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성
4.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성 및 보존성
5. 건축물 미술작품과 건축물과의 조화
6. 소장품 설치의 적정성
7. 건축물 미술작품가격의 적정성
8.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
9.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철거
10. 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을

-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축물미술작품
2.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
3. 건축물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로 한다.

안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여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8. 미술작품의 가격
9. 미술작품의 예술성
10.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11.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12. 미술작품의 안전성
13. 유지관리의 적정성
14.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등”으로 한다.

안 제19조제3항 중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전까지”를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로 한다.

안 제21조제1항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시마다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안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 “1.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그 밖에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등”을

“1. 미술·기획·건축·조경·유지관리 등의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안 제21조제3항제4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시민위원 선정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안 제21조제4항 중 “1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2조의 조제목 “규정의 준용”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안 제22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본문 중 “구성 및”을 “운영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안 제22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제15조는 3심이상의 작품에 한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한다.

안 제22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p> <p>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u> 2. <u>건축물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과의 친화성, 설치위치의 적정성)</u> 3. <u>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성</u> 4. <u>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u> 5. <u>건축물 미술작품과 건축물과의 조화</u> 6. <u>소장품 설치의 적정성</u> 7. <u>건축물 미술작품 가격의 적정성</u> 8. <u>제20조 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u> 9. <u>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철거</u> 10. <u>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u> <p>② <u>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공장소 및 특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u></p>	<p>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p> <p>① (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문화예술진흥법</u>」 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u>건축물 미술작품</u> 2. <u>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u> 3. <u>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u> <p><삭 제></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③ <u>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미술작품의 가격</u> 2. <u>미술작품의 예술성</u> 3. <u>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u> 4. <u>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u> 5. <u>미술작품의 안전성</u> 6. <u>유지관리의 적정성</u> 7. <u>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등</u>
<p>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p> <p>③ <u>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전까지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p> <p>③ <u>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u> ----- ----- ----- -----.</p>
<p>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 <u>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생략)</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u></p>	<p>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 -----<u>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1. <u>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p> <p>2.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p> <p>3. <u>그 밖에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등</u></p> <p>4. <신 설></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u>1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1. <u>미술·기획·건축·조경·유지관리 등의 전문가</u></p> <p>2.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p> <p>3. <u>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p> <p>4. <u>미술작품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u></p> <p>④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u>제22조(규정의 준용)</u></p> <p>그 밖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u>구성 및</u>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제22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u></p> <p>그 밖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u>운영에 관한 사항은</u>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u>다만, 제15조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